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
기간 결정의 건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3년 9월 일

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9월 일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그 기간을 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 간 : '23. 11. 2.(목) ~ 11. 15.(수), 14일간

※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('23. 11. 1. ~ 12. 12.) 중 14일 이내 실시

- 행정사무감사 진행일정

-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: 제4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(9. 6.)
-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 : 제411회 정례회 회기 중
※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 작성
-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: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(9. 19.)
- 행정사무감사 실시 : 제413회 정례회 회기 중(11. 2. ~ 11. 15.)
-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: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(12. 12.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 한다.

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따른다.

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【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】

제2조(감사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행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(이하 "감사위원회" 라 한다)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.